

#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85,795,000	38,573,850
일반회계	1,159,443,000	34,783,290
특별회계	126,352,000	3,790,560
공기업특별회계	101,888,000	3,056,640
상수도사업	45,719,000	1,371,570
하수도사업	56,169,000	1,685,070
기타특별회계	24,464,000	733,9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364,000	190,9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자기금	807,000	24,21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223,000	36,690
주택사업	387,000	11,610
주차장설치사업	479,000	14,37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411,000	12,330
보령담주변지역지원사업	682,000	20,460
의료급여기금사업	2,250,000	67,500
공공급식지원센터	11,861,000	355,83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82,157천원으로 한다.  
(일반 3,382,157천원, 재해재난목적 2,000,000천원)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5,500,000천원으로 한다.  
(지방채 한도초과액 7,500,000천원은 별도한도 인정 금액)

제 5 조 예산의 재원 구분을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제 6 조 예산의 재원 구분을 위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국: 국고보조금 / 균: 균특회계보조금 / 기: 기금보조금 / 특: 특별교부세 / 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 도비보조금 / 조: 특별조정교부금